

예 산 총 칙

2022년도 추경1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898,612,000	26,958,360
일 반 회 계	874,000,000	26,220,000
일 반 회 계	874,000,000	26,220,000
특 별 회 계	24,612,000	738,360
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	1,600,000	48,000
지 하 수 관 리 특 별 회 계	347,000	10,410
폐 기 물 처 리 시 설 설 치 사 업 특 별 회 계	11,474,000	344,220
기 반 시 설 사 업 특 별 회 계	145,000	4,350
주 차 장 특 별 회 계	11,046,000	331,38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,586,130천원으로 한다.

(일반예비비 5,424,758천원, 목적예비비 5,161,372천원)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2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